#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(안)

의 안 번 호 **2734** 

제출연월일 : 2023. 8. .

제 출 자:하남시장

1. 위탁사무명 :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

####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 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, 제21조의2 (시설의 위탁)
  - 「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9조(위탁운영)
  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- 추진 필요성
  -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위·수탁 협약기간이 2023.12.31.만료됨에 따라, 민간위탁(재계약)을 검토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의 능률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

## 3. 위탁사무 내용

-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
  - 교육·훈련 지원 :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, 교양 및 언어·인지 등의 교육 과 직업훈련,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의 이해를 위한 성교육, 인권교육 등의 교육·훈련 지원
  - 가족 지원 :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,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

- 일상생활 지원 : 식사 및 간식지원, 건강 및 위생관리, 일상생활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능력을 배양
- 여가활동 지원 :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한 문화·예술, 스포츠, 여가· 취미 활동 등 체험위주의 여가활동을 제공
-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: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이용 등 활동서비스 지원
- 특별활동 지원 : 여행, 캠프 및 기념일 활동 등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 하고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동 서비스 지원
- 자원봉사자 등 지원 :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를 개발하고,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를 위한 사회복지 현장실습생 지도

#### ○ 장애인급식소 운영

- 중식 지원 :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다목적복지회관 이용 장애인 등에게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

#### 4. 위탁시설 현황

시설명	위치	규모	종사자 현황	
하남시장애인	경기도 하남시	649.85㎡	13명	
주간보호시설	검단로19번길 27(하산곡동)	(ㅈ늄남층,ㅈ상1층)	(장애인급식소 <i>포</i> 함)	

- 5. 민간위탁기간 : 2024.1.1. ~ 2028.12.31.
  - 위·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(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)

### 6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사업명	2023년 예산	산출근거
장애인주간보호시설		- 인건비 : 584,830천원
운영	694,530천원	
(장애인급식소 포함)		- 운영비 : 109,700천원

#### 7. 수탁자 선정방식

- 기존 수탁기관인 '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남교회(대표 방성일)'가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우선추진
-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미흡할 경우 선정제외 및 공개 모집 추진

#### 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특성상 이용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도모와 삶의 질 향상,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활동위주의 프로그램, 교육 및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활동 등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
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 요한 사무에 해당하며, 법인 위탁 운영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내실화 도모
- 사업의 연속성 및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의 이점 등으로 재계약 우선 검토

#### 9. 향후 추진계획

- 2023. 10~11월 :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
- 2023. 12월 : 위·수탁 운영협약 체결

### 10. 성과평가 결과 : 붙임 1

○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 평가위원을 통한 현장 방문평가(서면심사)한 결과 100점 중 **93점** 

## 11. 관련 법령 및 조례 : 붙임 2

## 불입 1 성과평가 결과

## ○ 평가방법

- 평가지표에 따른 현장 방문 평가(서면심사)
- 심사기준표를 중심으로 세부 심사항목을 채점하여 평균점수 계산

## ○ 평가항목

평가 영역	평가 문항	배점	득점
합 계		100	93
[A] 조직 및 관리	A1. 시설 안전관리	6	6
	A2. 운영규정 및 지침	6	6
	A3.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	6	3
[B] 인력 및 재정 관리	B1. 직원채용의 공정성	3	3
	B2. 종사자 기준 충족 및 복지 제도	4	3
	B3. 회계의 투명성	6	6
	B4. 후원금(품) 사용 및 관리	8	6
	C1. 프로그램 수행	5	5
	C2. 서비스 제공기록 관리	5	5
[ C ]	C3.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다양화	5	5
프로그램 및 이용자 관리 	C4. 프로그램 우수 사례	5	5
	C5. 이용인 인권침해 예방	5	5
	C6. 이용인 권리 보호	5	5
[ D ]	D1. 지역사회네트워크	5	5
지역사회 관계	D2. 자원봉사자 관리	5	4
	E1. 법인부담금 이행정도	7	7
[ E ] 위탁 조건이행	E2.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정도	7	7
	E3. 위탁 기간 중 수범실적	7	7

#### 불임 2

## 관련 법령 및 조례

## 1 장애인복지법

####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「의료법」에 따른다.
-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·신고·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2 사회복지사업법

####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- 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-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####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- 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####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- 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- 2. 위탁계약기간
-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-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-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-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-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### 4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#### 제9조(위탁운영)

-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.
-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## 5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

####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